C - 44 - 2015

	기 능	용도, 사용장소, 조건	설비
낙 하 •	위에서 낙하된 것을 막는 것	철골 건립, 볼트 체결 및 기타 상 하작업	방호철망, 방호울, 가설앵커설비
비 래 및 비	제3자의 위해방지	볼트, 콘크리트 덩어리, 거푸집, 일반자재, 먼지 등이 낙하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	방호철망, 방호시트 방호울, 방호선반, 낙하물 방지망
- 산 - 방 지	불꽃의 비산방지	용접, 용단을 수반하는 작업	방염포, 불연포 (Glass Wool 등)



<그림 13> 철골 공사의 추락방지망 설치

- (3)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 mm 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, 작업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(4) 낙하·비래 및 비산방지설비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, 2단 이상 설치 시에는 최하단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설치방법은 그림 12 와 같이 건물외부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 m 이상 돌출하고 20°부터 30°사이의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.